

서울고등법원 2023. 6. 30 선고 2021나2019192 판결 [공사대금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3. 6. 30 선고 2021나201919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12 선고 2019가합1645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연오

원고승계참가신청인J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남

피고보조참가인C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평

담당변호사 김경규, 이솔

변론 종결2023. 5. 12.

판결 선고2023. 6. 30.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12. 선고 2019가합1645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160,098,364원 및 그중 57,167,754원에 대한 2021. 7. 17.부터의, 28,818,468원에 대한 2022. 1. 15.부터의, 74,112,142원에 대한 2022. 12. 20.부터의 각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8,763,497원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승계참가신청인의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의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하며, 승계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4.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6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9,207,7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승계참가신청인의 참가신청취지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신청인에게 103,035,61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2쪽 이유 3줄의 "D이 대표이사이고"를 "D이 2021. 1. 8.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로 고쳐 쓴다.

○ 제2쪽 이유 6, 7줄의 "F은 2019. 5. 27.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를 "E과 F은 2019. 5. 27.까지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였다."로 고쳐 쓴다.

○ 제4쪽 표 아래 1~4줄을 삭제하고, 제4쪽 표 아래 5줄의 "3)"을 "2)"로, 제4쪽 표 아래 9줄의 "4)"를 "3)"으로 각 고쳐 쓴다.

○ 제4쪽 마지막 줄 위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진행

원고의 채권자들인 K, L 주식회사1), 원고승계참가신청인(이하 위 채권자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추심채권자들'이라 한다)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지급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 청구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하고, 각 해당 명령에 대하여는 아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정보는 아래 표 '송달일'란 기재 각 일자에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1	K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타채11866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57,167,754원	2021. 7. 13.	2021. 7. 16.(피고)
2	L 주식회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타채10055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8,818,468원	2022. 1. 11.	2022. 1. 14.(피고)

1	K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타채11866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57,167,754원	2021. 7. 13.	2021. 7. 16.(피고)
3	원고승계참가 신청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타채13496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03,035,616원	2022. 12. 14.	2022. 12. 19.(피고)
합계	189,021,838원				

』

- 제5쪽 1줄과 마지막 줄의 각 "증인 F의 증언"을 "제1심 증인 F의 증언"으로 각 고쳐 쓴다.
- 제5쪽 3줄을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존부에 관한 판단"으로 고쳐 쓴다.
- 제5쪽 3줄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가. 원고의 당사자적격에 관한 직권 판단

1) 관련 법리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60417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85717 판결 등 참조).

채권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추심명령은 그 채권전액에 미치며(민사집행법 제232조 제1항), 판결 결과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한 경우 해당 소송의 소송물인 실체법상 채권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이 된다. 이러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종된 권리에도 미치므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 생기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도 당연히 미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1587 판결,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30467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사건 판결 결과에 따라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채권 중 이 사건 추심채권자들이 합계 189,021,838원에 이르는 금액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졌고 그 각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이 사건 소송물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액인 189,021,838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 이후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들이 제기할 수 있으며, 원고는 이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판단의 순서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명령의 대상이 된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당사자적격을 상실한 자가 제기한 소로서 각하하여야 하는데, 추심명령이 피압류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효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만을 가려내어 그 부분 청구의 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본안 판단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먼저 판단한 후에 원고의 당사자적격 상실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 제5쪽 4줄의 "가."를 "다."로 고쳐 쓴다.

○ 제5쪽 11, 12줄의 "54,730,770원을 빼지 않고, 서울상수도, 한국전력공사 관련 비용을 중복 공제한"을 "54,730,770원을 빼지 않은"으로 고쳐 쓴다.

○ 제5쪽 16줄의 "금액은 빼고, 중복 공제된 비용을 더한 금액"을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고쳐 쓴다.

○ 제7쪽 7~9줄의 "③ 피고도 ... 있는 점"을 "③ 피고 역시 제1심의 2020. 6. 12. 제1회 변론준비기일에서 원고가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H의 명의를 빌렸을 뿐이고 이 사건 공사는 실질적으로 D이 주도하여 원고가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으로 고쳐 쓴다.

○ 제8쪽 6~11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결국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공사대금은 총 계약금액 1,210,000,000원에서 피고가 매입 처리한 54,730,770원(서울상수도, 한국전력공사 관련 비용이 포함된 금액임), H과 원고가 지급받은 621,000,000원, 피고가 직불 처리한 424,572,890원(서울상수도, 한국전력공사 관련 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원고가 추가로 지급받은 9,000,000원, 하자보수비용 23,276,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77,420,340원(= 1,210,000,000원 - 54,730,770원 - 621,000,000원 - 424,572,890원 - 9,000,000원 - 23,276,000원)이다.』

○ 제8쪽 12줄부터 제9쪽 17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라. 추가공사대금 청구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의 설계변경 요청에 따라 추가공사를 진행한 사실, 피고의 대표이사 F이 2018. 12. 12. '건축주 C사로부터 H과 원고의 책임자 D은 건별 구두 지시에 따라 본계약 체결 이후 설계변경으로 진행된 추가공사를 완료했고, 요청금액 197,000,000원(부가세 별도)을 청구하였는바, 제출된 세부 내역에 대해 감리보고서 작성자, I 현장관리자, 실행하도급 사업주체 등의 확인을 거쳐서 합리적으로 결정한 공사비를 완공 후 15일 이내에 건축주로부터 청구 수령해 지급할 것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 법원 감정인 M의 감정 결과 및 이 법원의 위 감정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감정 결과'라 한다)에 의하면, 이 사건 추가공사의 공사대금이 82,678,024원(= 추가공사비 75,161,840원 + 부가가치세 7,516,184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추가공사 항목에 관한 설계변경이나 계약금액의 조정 절차가 없었으므로,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사계약서 제14조에 '피고는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발주자의 요청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 또는 공사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시공을 일시 중지할 경우에는 변경계약서 등 서면을 사전에 원고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나, 위 문구에 의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공사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일 뿐 변경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으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갑 제7, 12호증, 을 제39, 5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의 요청에 따라 설계변경을 한 후 추가공사를 진행하고,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추가공사비의 지급을 청구한 사실, 이에 피고의 대표이사 F이 2018. 12. 12. 앞서 본 것처럼 감리보고서 작성자 등의 확인을 거쳐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가 수행한 위와 같은 추가공사 부분을 포함하여 반소를 제기하였던 사실[위 소송에서 이 사건 감정결과에 따른 추가공사비

75,161,840원이 피고의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채권으로 인정되었고, 그 판결이 2022. 11. 10.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1나2018939(본소), 2021나2018946(반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서 제14조에 따라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선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추가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서 제14조에서 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로 하되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감정인은 이 사건 공사계약의 산출내역서에 있는 비목의 경우에는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추가공사비를 산정하고, 산출내역서에 계약단가가 없는 비목의 경우에는 원고가 실제로 지급한 단가 내지 표준품셈기준단가를 적용하여 추가공사비를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입찰을 통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낙찰율을 확정할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감정인의 위와 같은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는, 추가공사 부분 중 원고가 아닌 H이 실시한 골조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감정인은 원고가 피고 내지 피고보조참가인의 설계변경요청에 따라 지붕공사, 지붕층 철골 절단공사 등의 추가공사를 진행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추가공사비를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소결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채권은 미지급 공사대금 77,420,340원과 추가공사대금 82,678,024원의 합계 160,098,364원 및 이에 대하여 준공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9. 4.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6. 30.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된다(이하 위와 같이 인정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대상채권'이라 한다).

』

3. 원고의 당사자적격 및 청구범위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추심채권자들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대상채권 중 각 청구금액에 이르는 금액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나. 먼저 원고가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대상채권 원금은 160,098,364원에 불과한 반면, 이 사건 추심채권자들의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청구금액 합계액은 189,021,838원으로 이를 초과한다. 따라서 이 사건 대상채권 원금 전부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미치므로, 원고는 위 청구 부분에 대하여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

다. 나아가 이 사건 대상채권 중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 전의 지연손해금 채권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160,098,364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9. 4. 19.부터 송달일자가 가장 앞선 이 사건 1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2021. 7. 16.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1,554,064원[= 160,098,364원 × (2 + 89일 / 365일) × 0.06,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이 사건 1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청구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 원금 102,930,610원(= 160,098,364원 - 57,167,754원)에 대하여 이 사건 1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 다음 날인 2021. 7. 17.부터 이 사건 2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2022. 1. 14.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3,079,458원(= 102,930,610원 × 182일 / 365일 × 0.06), 이 사건 1, 2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청구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 원금 74,112,142원(= 102,930,610원 - 28,818,468원)에 대하여 이 사건 2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 다음 날인 2022. 1. 15.부터 이 사건 3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2022. 12. 19.까지의 지연손해금 4,129,975원(= 74,112,142원 × 339일 / 365일 × 0.06) 합계 28,763,497원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그 당사자적격을 유지한다.

라. 소결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160,098,364원 및 그중 57,167,754원에 대한 2021. 7. 17.부터의, 28,818,468원에 대한 2022. 1. 15.부터의, 74,112,142원에 대한 2022. 12. 20.부터의 각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 사건 추심채권자들의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원고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여 부적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분을 제외한 지연손해금 28,763,49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위와 같이 원고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한 부분과 원고의 당사자적격이 유지된 지연손해금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4. 원고승계참가신청인의 승계참가신청에 관한 판단

가. 원고승계참가신청인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3번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는데, 원고승계참가신청인이 이 법원 변론종결일 이후인 2023. 5. 30. 승계참가신청을 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나. 민사소송법 제81조에 따르면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의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송에 참가할 수 있으나, 승계참가신청이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제기된 경우 변론의 재개 여부는 법원의 직권사항이고 법원에 재개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다2699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변론재개를 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승계참가신청인의 승계참가신청은 변론종결 후에 제기된 것으로 그 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160,098,364원 및 그중 57,167,754원에 대한 2021. 7. 17.부터의, 28,818,468원에 대한 2022. 1. 15.부터의, 74,112,142원에 대한 2022. 12. 20.부터의 각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청구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부분은 이유 있어 인용하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고, 원고승계참가신청인의 승계참가신청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원형

판사심영진

판사권혁준

1) L 주식회사는 당심에서 승계참가를 신청하였으나, 변론기일에 2회 출석하지 않고 그로부터 1월 이내에 기일지정을 신청하지 않아 신소제기의 성질을 갖는 위 승계참가신청은 취하 간주되었다.